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33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의 범위,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
 -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(안 제28조제2항)
 -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(안 제30조제7항)
- ※ 법령위임조례(규제완화) 정비과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7. 3. 10.~3. 30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전국 개정현황(1): 강릉시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 제7항)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”은 100퍼센트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대부 또는 사용·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.	제28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----- ----- ----- -----
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②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1.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	
가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분납	
나. 2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분납	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	
가. 50만원 이하 : 3개월 이내 2회 분납	
나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분납	
다. 1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분납	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삭제>	④ <삭제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	제30조(대부료의 감면)
①~⑥ (현행과 같음)	①~⑥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⑦ 군수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”은 100퍼센트로 한다.
⑦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	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